

# 2018년 기후 온난화 대응 아열대 과수 도입 시범사업 추가신청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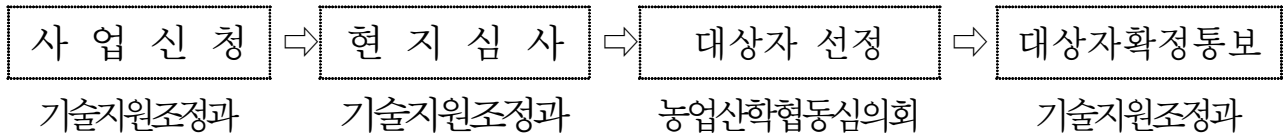
## □ 추진 일정

- 홍보기간 : 2018. 5. 21. ~ 대상자 선정시까지
- 신청기간 : 2018. 5. 21. ~ 대상자 선정시까지
- 신청장소 :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
- 신청방법
  -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방문  
시범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
### < 신청서류 >

- 기본서류
    - 사업신청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   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배우자 포함)
    - 시범사업장 농업인 교육장 활용 동의서
    -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이력 확인 내역
  - 추가서류
    -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직장인)
    - 토지대장, 등기부등본(건물 등 시설 관련사업)
    - 감귤 식재년도 확인서(감귤관련사업)
    - 졸업증명서(농과계학교 졸업시), 농업인단체임원활동경력서
    - 농업인교육 이수확인서(최근 3년간), 농업인상 수상 사본  
(농업기술원, 농업마이스터대학, 감귤대학 등)
- 서류 및 현지심사 : 신청시 현지심사 병행 추진
  - 선정 심의회 개최 : 2018. 5. 하순 예정(선정시까지 월별개최)
  - 사업추진 : 2018. 5월 ~ 12월
  - 사업평가 : 2018. 6월 ~ 12월(중간, 결과평가 2회)

□ 사업대상자 선정 : 2018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침에 의거 선정



□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

-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포장의 위치는 도로변의 포장을 우선 선정
-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의지가 강한 농업인
  - 심사결과 동점인 경우 연령이 낮은 농업인 우선 선정
- 최근 시범사업 추진 상황, 보조사업 지원여부 등
  - 전년도 1천만 원 이상, 최근 3년 이내 3천만 원 이상 시범사업을 지원받은 자와 전년도 5천만 원 이상, 최근 3년 이내 2억 원 이상 보조를 받은 영농법인 등 생산자단체는 1차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신청자 부족에 따른 2차 선정 시 후순위로 배정 선정
- 국비 매뉴얼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 동일사업 신청자는 사업 대상자에게 배제
-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 등을 통하여 사업대상 요건, 선정기준 이행
- 기타 사업별 필요한 항목을 배점 기준으로 설정 하여 대상자 선정
  - ※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새로운 기술을 사업포장에 실천하기 곤란하거나 시범사업 포장을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을 동의하지 않는 농업인 등은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

□ 보조사업 신청자 주의사항

-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사업 추진 중에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『보조금법』 제35조2에 따라 부기등기 조치 등을 하여야 함.

※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 및 재산처분의 제한을 기재하도록 하는 부기등기 제도도 병행(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·공포), '15. 7월 7일 부터 시행

○ 농어업경영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(附記登記) 의무화

-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항

○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(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)에 의거 1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한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차년도 4개월 이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보조금 교부 신청서, 사업계획서, 보조사업 수입 지출내역, 정산보고서(검증보고서), 감사보고서, 재무제표(결산서) 등을 공시하여야 함.

<시범사업 대상자 신청 시 유의사항 >

○ 사업신청자의 사업대상 토지는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이어야 하며 부득이 임차를 할 경우에는 사업신청 해당연도부터 사후관리 기간까지, 하우스 시설 및 건물(저장고, 가공실 등)을 신축 지원되는 시범사업은 10년 이상 임대차 계약이 되어 농지원부에 등재 되어 있어야 함.(사업수행 시 사후관리 기간까지 계약 잔여 기간이 남아야 함)

○ 시범사업은 동일분야가 아니라도 1개 사업 이상 신청 불가

※ 상기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2018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운영 지침의 의거 추진